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29 발의연월일: 2021. 5. 24.

발 의 자: 허은아 · 추경호 · 박완수

김용판 • 권성동 • 김영식

황보승희 · 홍문표 · 김 웅

이 용・지성호・이태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합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능재난의 원인 및 피해 등 재난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조사위원회의 역할임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조사위원회를 어떤 사람 들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민간인 신분인 위원 으로 하여금 공적인 책임감을 갖추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생각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제43조의2 신설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조사위원회"를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이하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조사위원회"를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로 한다.

- ②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 무원
- 2. 관련 시·도 지사가 지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3. 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는 소속 임직원
- 4. 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자,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는 재난상황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제3절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제43조(재난 조사 등) ① 원자력 제43조(재난 조사 등) ① -----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이 발 생한 경우에는 관련된 지방자치 단체 및 원자력사업자와 합동으 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 --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이하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할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라 한 수 있다. 다)---. ②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는 위 <신 설> 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의 위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2. 관련 시·도 지사가 지명하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관련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하 는 소속 임직원

<신 설>

<신 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4. 방사능재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는 재 난상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원자력사업 자,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는 재 난상황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u>⑥</u> <u>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u>----

-----.

제4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